

의류산업과 소비자 보호정책

최형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Clothing Industry and Consumer Protecting Policy

Choi Hyeongki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CIE
Living and Welfare Standards Division

1. 서론

1910년대 수공업 형태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문을 연 섬유·의류산업은 '87년 수출역사상 단일산업으로는 처음으로 100억불을 넘기는 진기록을 수립하며 우리나라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총 수출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구는 2,650명으로 생산지 고용인구의 14.9%가 실에서 의류 완제품에 이르는 18,989개의 섬유·의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산업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섬유·의류산업은 그 구조면에서도 섬유산업의 전통적인 강국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태리, 독일과는 매우 상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 합성장섬유 직물은 세계 1위, 화학섬유는 세계 4위의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봉제업체나 디자인 업체의 경우 초미니 업체도 상당수 존재하는 등 그 규모나 성격 면에서 복잡적이며 다양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섬유·의류산업은 일정량의 보호 아래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된 세계 섬유·의류제품 쿼터제 철폐로 무한 자유경쟁체제에 노출되었고, 국내 소비시장에서도 장기적인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신흥 섬유 국가와 국경간 투자방식(Cross Border Invest-

ment)과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s)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시장동향과 소비패턴에 있어 섬유·의류 산업은 태동 이래 최대의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발동, 반덤핑 제소, 원산지규정 강화 등 섬유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섬유·의류산업의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한 체질 개선과 수출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업용섬유 개발 및 염색가공, 패션디자인 등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 지역별 섬유산지의 특화·집적화, QR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 전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섬유·의류제품의 수출입 활성화, 소비자의 안전·권의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의 무역법」을 제정하여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이를 산업계 및 소비자에게 홍보함으로써 올바른 섬유 소비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 섬유·의류산업의 수급 동향 파악을 통해 관련 섬유·의류산업의 우리 사회에서의 위치 및 관련 법규의 재정비 중요성을 알아보고,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무한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섬유·의류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섬유 · 의류산업의 수출입 동향

섬유 · 의류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및 관세 철폐에 따른 자유무역체제로의 진입,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과의 세계 수축시장에서 경쟁 심화 등으로 200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제품류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류, 원료류 및 직물류는 2002년에서 2004년에 걸쳐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원료류의 경우 2003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제품류에서도 29%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 이외의 기타 제품류는 소폭이나마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0.5%)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미국(▽4.3%), 홍콩(▽5.9%), 일본(▽1.2%) 등으로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4.2%), 베트남(△11.9%), 인도네시아(△3.4%), 아랍에미리트(△2.1%) 등으로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02년부터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비중은 미국(18.7%), 중국(18.2%), 홍콩(7.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04년도 섬유 · 의류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69억 달러로 전반적으로 수입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상품인 제품류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9.7%), 미국(4.1%), 인도(△19.8%), 인도네시아(△8.0%), 대만(20.1%) 등으로부터 수입은 증가를 나타냈으며, 일본(▽4.9%), 이탈리아(▽5.3%) 등으로부터는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이중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다가 '04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수입비중은 중국이 50.5%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6.4%), 이탈리아(6.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섬유 · 의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로 주문자 상표부착(OEM) 수출방식에 의한 소품종 대량생산 및 범용품 몰량위주의 수출구조로,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상품기획 능력이 부족하고 생산품목이 전문화되지

표 1. 섬유 · 의류산업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 출	17,461 (△3.3)	18,808 (△7.7)	16,104 (▽14.4)	15,694 (▽2.5)	15,273 (▽2.7)	15,214 (▽0.4)
수 입	4,537 (△31.2)	5,366 (△18.3)	5,466 (△1.9)	6,240 (△14.2)	6,448 (△3.3)	6,941 (△7.6)
무역수지	12,924 (▽3.9)	13,442 (△4.0)	10,638 (▽20.9)	9,454 (▽11.1)	8,824 (▽6.7)	8,273 (▽6.2)

* 자료출처: KOTIS(천연섬유원료 포함)
*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표 2. 품목별 섬유류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원료류	770 (▽3.6)	884 (△14.8)	713 (▽19.3)	698 (▽2.2)	801 (△14.8)	939 (△17.2)
사 류	1,401 (▽8.5)	1,535 (△9.5)	1,269 (▽17.3)	1,392 (△9.7)	1,564 (△12.3)	1,582 (△1.2)
직물류	9,401 (△3.7)	10,263 (△9.2)	8,843 (▽13.8)	8,666 (▽2.0)	8,307 (▽4.1)	8,350 (△0.5)
제품류	5,889 (△6.9)	6,126 (△4.0)	5,279 (▽13.8)	4,938 (▽6.5)	4,601 (▽6.8)	4,343 (▽5.6)

* 자료출처: KOTIS(천연섬유원료 포함)
*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표 3. 품목별 섬유·의류 수입 동향

(단위 : 백만불)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원료류	801 (△5.3)	739 (▽7.8)	769 (△4.0)	702 (▽8.7)	715 (△1.8)	747 (△4.4)
사 류	1,445 (△46.3)	1,525 (△5.5)	1,421 (▽6.8)	1,471 (△3.5)	1,344 (▽8.6)	1,461 (△8.7)
직물류	1,312 (△25.2)	1,517 (△15.6)	1,328 (▽12.4)	1,398 (△5.2)	1,350 (▽3.4)	1,411 (△4.5)
제품류	0979 (△47.8)	1,585 (△61.9)	1,948 (△22.9)	2,669 (△37.0)	3,039 (△13.9)	3,322 (△9.3)

* 자료출처: KOTIS(천연섬유원료 포함)

*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못하여 범용품의 과당경쟁요소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섬유·의류제품의 수출물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단가는 하락하고 있어 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 등 후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저가품 공략,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섬유산업분야의 산업기반과 경쟁력을 견고하게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섬유·의류제품은 국제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국내시장으로의 외국 제품의 수입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섬유·의류산업의 정상적인 국내 활동의 지원 및 중국 등으로부터 무차별 수입·유통되고 있는 저가 의류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품질표시,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제조·소비 환경에 있어서의 친환경 섬유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규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품질표시제도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통해 섬유 및 의류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생산자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에서 품질표시제도,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3. 품질표시제도

의류제품의 다양화, 유통구조의 변혁, 자유무역 체제의 완전 돌입 등 외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소비자의 의류소비 문화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소비자는 새로운 제품을 선택하여 구입하는데 종전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서 안전하게 판매되고,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생산자는 제품정보를 정확히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 정보에 의한 제품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을 할 때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의류제품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동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67년 “공산품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섬유제품, 합성수지가공품, 전기기계기구, 고무제품, 유류 및 유지제품, 시멘트 가공제품의 품질표시 의무시행 내용 및 이행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직물은 물론 기성복, 메리야스 외의, 스카트, 드레스, 와이셔츠류, 브라우스, 사무복, 작업복, 코오트류, 잠옷, 설타류, 내의, 양말, 손수건, 장갑, 모포, 시이트, 타올, 솜, 카텐, 마후라의 피복 및 기타 섬유제품에 대해 판매사업의 품질표시 제기와 의류제조업자의 허위표시를 금지하였으며, 허위표시자 및 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운영하였다.

이후 의무 조항이었던 섬유제품의 품질표시제도는 '99년 2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품질경영촉진법”을 전면 개정하며 품질표시제도 및 공산품품질심의위원회 등 관련 조항을 완전 폐지하므로 사실상 품질표시 없이 의류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의류제품의 품질표시제도의 미비는 소재의 성분이나 혼용률을 허위표시하거나 취급상 주의표시를 오용하는 등 건전한 유통 및 소비자 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에 2000년 12월 지금의 자율적인 품질표시제도로 재도입하게 되었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8조(품질표시)에 의하면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에 대하여 그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당해 공산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품질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할 수 있어 미흡하나마 공산품의 품질 관리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품질표시제도는 외국의 경우도 형태를 달리하고는 하지만 자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문제는 소비자정보의 불안정으로부터 야기되므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행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강제해야 한다는 이념 아래, 1906년의 The Food and Drug Act로 부터 시작하여 품질, 성능, 유효기간, 보증기간에 대한 표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각 공산품과 관련된 협회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율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연방정부(Federal), 주정부(State), 지방정부(Local)에서 정하는 법에 의해 운영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의무적 표시명령과 관련 법으로는 상품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상업표시법(Trade Descriptions Act),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Act),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량법(The Weight & Measures Act) 등이 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재사항은 내용물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표시일 경우에는 제재하고 있다. 특히 기재사항에는 문자로 주어지는 정보이외에도 각종 인가 또는 승인 마크 등 도안으로 표기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단체에서는 테일 닥(Tail Dag)제도 등과 같은 표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 평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상품의 기본정보를 규격화된 형태로 표기하도록 하고, 대상 상품 및 규격은 관련 업계와 협의 하에 결정하고 그 성능의 측정은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정용품표시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계량법, 소비생활용품안전법, 공업표준화법(JIS), 농림물자의 규격상품표시통정화법(JAS) 등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품질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해 품질표시를 할 내용·표시 위치 등의 결정을 정한 법률로서 실, 직물, 옷, 바지, 스커트, 드레스 및 홈드레스, 폴 오버, 가디건 그 외의 스웨터, 와이셔츠, 블라우스, 에이프론, 요리복, 사무복 및 작업복, 오버코트, 어린이용 오버올, 속옷, 잠옷, 양말, 버선, 장갑, 손수건, 모포, 시트, 타올 및 손수건, 기모노, 머플러, 커튼, 마루갈래, 이부자리, 이불 및 침대커버, 테이블보, 넥타이, 수영복, 보자기, 장식 끈 등 35개 의류 관련 제품 이외에도 세면기 등 8개 합성수지 가공품, 전기세탁기 등 17개 품목의 전기기계기구, 보온병 등 30개 품목의 잡화 공업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배할 경우는 제조, 판매 또는 표시업자로부터 보고

를 받거나 또는 공장·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 혹은 창고에 들어가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표시사항 위반시 적정표시명령, 판매 또는 진열을 금지 및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만 엔(약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법, 일본은 가정용품표시법, 유럽은 유해물질의 분류·포장·표시에 관한 지침에 의해 의류제품의 품질표시제도를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품질표시의 이행여부는 생산자 및 판매인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품질표시 미 이행 및 허위표시 등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하여 소비자 문제가 발생 했을 시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해결할 수도 있으나, 성분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표시만을 표시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제도만으로는 소비자가 의류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권리를 보호받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1조(품질의 표시 등), 제32조(거짓의 품질의 표시등의 금지), 제33조(품질의 표시등이 없는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판매등의 금지)의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하여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시기준에 맞게 품질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하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거짓의 품질의 표시등의 금지, 판매업자는 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 또는 제거 금지하고 판매업자는 품질표시가 없는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판매, 판매를 위한 진열 또는 보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하여 법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류제품의 경우 품질표시사항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현행 품질표시를 규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개정 추진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을 비교하면 표4와 같다.

동 법률개정안은 '05년 국회 심리를 거쳐 공포되고, “섬유제품 품질표시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07년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품질표시 기준은 의류, 한복, 수의류, 양말,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쇼울, 넥타이, 이불, 요, 가방 등의 기타 섬유제품에도 적용되며, 외의류의 경우 섬유 조성 또는 혼용율, 치수, 방수, 발수 및 방염 등 가공여부, 충전제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충전 섬유소재명과 다운폼은

표 4. 현행 법률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p>제8조(품질표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는 그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당해 공산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p>	<p>제31조(품질의 표시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품질표시대상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와 그 밖의 표시(이하 "품질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32조(거짓의 품질의 표시등의 금지)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의 품질의 표시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판매업자는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표시한 품질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p>
<p><신설></p>	<p>제33조(품질의 표시등이 없는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판매 등의 금지) 판매업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 또는 보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숨털, 깃털 함량,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자명, 제조년월, 수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제조국명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섬유제품 종류에 따른 상세한 품질표시사항은 [표 5]에 나타내었다.

섬유제품분야의 상품별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을 살펴보면, 품질표시 사항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의 하나인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을 표시는 조성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수치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성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실로 된 원단, 그 원단 또는 조성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상품에 대하여는 다른 실 또는 원단의 매사용 부분을 분리하여 그 사용부분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각 사용부분별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원단의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는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직물의 양면이나 직물의 필단위 끝부분 또는 말대에 제직, 날염, 금은박, 프린트나 떨어지지 않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직물 및 모혼방직물은 직물의 양면 2m(또는 2m 이내)마다 제조(가공)자명(또는 수입자명) 및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류제품의 치수표시는 기본신체치수를 cm 단위없이 “—”로 연결하여 표시하는 한국산업규격의 제품별 치수규격을 준용하고 있다. 특히 기술표준원에서는 ‘03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실시한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결과인 15,664명의 119개 항목에 이르는 한국인 인체치수자료를 활용하여 의류치수 관련 한국산업규격을 제개정하여,

‘99년 개편된 기존의 KS K 0050 남성복의 치수 등 의류제품의 치수규격과 ‘05년까지는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의 인체치수자료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편된 의류치수 관련 한국산업규격은 KS K 0050 성인남성복의 치수, KS K 0051 성인여성복의 치수, KS K 0052 유아복의 치수, KS K 9400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1 여자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2 남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3 여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4 파운데이션의류 치수, K 0055 노년여성, K 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 K 0059 모자의 치수 등이 있다. 여기서는 개편된 의류치수체계의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KS K 0050 성인남성복의 치수 규격의 호칭표시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KS K 0051 성인여성복의 치수 규격 등 13종의 치수 관련 규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한국산업규격에서 상술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원에서는 홈페이지(www.ats.go.kr)를 통해서도 한국산업규격의 원문 검색서비스를 사이트코리아 홈페이지(http://sizekorea.ats.go.kr) 등을 통해서도 간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발수가공여부의 표시는 코트류는 발수도 70 이상, 운동복, 자켓 및 잠바는 50 이상일 경우 「발수가공됨」이라 표시할 수 있으며, 원단중 커튼 전용 원단에 대하여는 방염가공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제품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급상 주의사항의 표시는 아래에 제시한 취급상 주의표시를 그 제품에 적합한 내용으로 3종류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 시험방법은 KS K 0021에 따르도록 하

표 5. 상품별 품질표시사항

섬유상품	품질표시사항
<p>1. 실(전부 또는 일부가 면, 모, 견, 마, 비스코스레이온섬유, 동암 모뉴레이온섬유, 아세테이트섬유,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계 합성섬유,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합성섬유,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리덴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 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에 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번수 또는 데니어(가공된 실은 제외) 3. 길이 또는 중량 4. 제조년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8. 제조국명
<p>2. 원단(위의 실을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 편성물, 부직포 및 레이스 원단, 커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폭 3. 길이 또는 중량 4. 방염가공여부(커튼 전용원단 중 방 염가공된 제품에 한함) 5. 취급상 주의(생지원단은 제외) 6. 제조자명 7. 제조년월 8. 수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9.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10. 제조국명
<p>3. 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중량 3. 제조자명 4. 제조년월 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6.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7. 제조국명
<p>4. 위의 실 및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섬유제품(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류(남성의류 및 여성의류의 총칭 : 슈우트, 스웨터, 자켓, 오바, 커버롤 등) - 중의류(남성의류 및 여성의류의 총칭 : 베스트, 브라우스, 셔츠, 조끼 등) - 내의류 (남성의류 및 여성의류의 총칭 : 팬티, 내의, 슬립, 파운데이션, 란제리, 수영복, 체조복 등 신체에 접촉되는 의류) - 유아용 의류 - 양말류, 잠옷류, 다운의류, 이불 및 요, 모포, 침낭, 카페트, 학생복,모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치수 3. 방수, 발수 및 방염 등 가공여부 (방수, 발수 및 방염처리 등 특수가공된 제품에 한함) 4. 충전제 (충전제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소재명(이불 및 요 침낭은 섬유 소재명 및 %표기) - 다운의류, 이불 및 요 중 다운제품은 솜털, 깃털, 기타로 구분하여 %표기 5. 취급상 주의사항 6. 제조자명 7. 제조년월 8. 수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9.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10. 제조국명
<p>5. 위의 실 및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섬유제품(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 - 수의류 - 기타섬유제품(장갑,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쇼울, 넥타이, 가발류, 모기장, 덮개류, 가방, 기저귀류, 턱받이류, 가발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취급상 주의사항 3. 제조자명 4. 제조년월 5. 수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6.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7. 제조국명

표 6. 체형분류가 필요한 성인 신사복 상의의 호칭 표기(가슴둘레-허리둘레-키) 예시

배가 나온체형 (BB 형)		허리가 굽은체형 (B 형)		보통체형 (A 형)		역삼각체형 (Y 형)	
85-82-160	91-85-170	85-73-160	85-73-170	97-82-160	85-70-175	88-67-165	88-67-175
88-85-160	94-88-170	88-76-160	88-79-170	85-70-165	88-73-175	91-73-165	91-70-175
91-85-160	97-91-170	91-79-160	91-79-170	88-70-165	91-76-175	94-73-165	94-73-175
94-88-160	100-94-170	94-82-160	94-85-170	91-76-165	94-79-175	97-76-165	97-76-175
97-91-160	103-97-170	97-85-160	97-85-170	94-79-165	97-82-175	100-79-165	100-79-175
100-94-160	94-91-175	100-88-160	100-88-170	97-82-165	100-85-175	85-67-170	103-82-175
88-82-165	97-91-175	85-76-165	103-91-170	100-85-165	103-88-175	88-67-170	91-70-180
91-85-165	100-94-175	88-79-165	106-94-170	103-88-165	106-91-175	91-70-170	94-76-180
94-88-165	103-97-175	91-82-165	94-82-175	85-70-170	109-94-175	94-73-170	97-76-180
97-91-165		94-85-165	97-85-175	88-73-170	88-73-180	97-76-170	100-76-180
100-94-165		97-85-165	100-88-175	91-73-170	91-76-180	100-79-170	103-82-180
103-97-165		100-88-165	103-91-175	94-79-170	94-79-180	103-82-170	106-85-180
		103-91-165	106-94-175	97-82-170	97-79-180		97-79-185
		106-97-165	97-88-180	100-85-170	100-85-180		
			100-91-180	103-88-170	103-85-180		
			103-91-180	106-91-170			

표 7. 체형분류가 필요한 성인 신사복 하의의 호칭 표기(허리둘레-엉덩이둘레) 예시

보통체형(A 형)				허리가 굽은체형(B 형)			
68-84	72-94	76-96	82-94	80-88	84-96	90-92	92-102
68-88	74-88	78-90	82-96	80-90	86-90	90-94	94-96
70-86	74-90	78-92	82-98	80-92	86-92	90-96	94-98
70-88	74-92	78-94	82-100	82-90	86-94	90-98	94-100
70-90	74-94	78-96	84-96	82-92	86-96	90-100	94-102
70-92	74-96	78-98	84-98	82-94	88-92	92-92	96-98
72-86	76-88	80-92	84-100	84-88	88-94	92-94	96-100
72-88	76-90	80-94	86-98	84-90	88-96	92-96	96-102
72-90	76-92	80-96	86-100	84-92	88-98	92-98	98-104
72-92	76-94	80-98	88-100	84-94		92-100	

고 있다. 취급상 주의표시는 세계 각국이 표준화하여 사용 하여야 할 가장 대표적인 의류제품의 정보로 국제규격(ISO 3758:2005 Textiles - Care labelling code using symbols)의 표준화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규격으로 의 부합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섬유소재에 따른 물세탁 방법, 염소가공 다림질방법, 드라이클리닝, 찌는 방법, 건조방법의 취급상 표시기호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사 등 명칭부기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 함), 제조년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제조국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조의 방법으로 판매자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품질표시는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

치에 선명한 문자를 사용하여 날개에 제품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품질표시를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실, 원단, 솜, 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는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카를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할 수 있으며, 동일품명으로 2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는 상기에서 서술한 품질 표시제 도 이외에도 안전검사제도와 안전검증제도로 구분되어 “품

표 8. 기타 기본신체치수 호칭 및 범위표시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

가슴 둘레	치수 범위	호 칭									의류 예
		80	85	90	95	100	105	110			
허리 둘레	치수 범위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점퍼, 캐주얼셔츠, 편물제 상의류, 운동복 상의, 작업복상의, 내의류상의, 잠옷 상의
		M	M	L	L	XL	XL				
엉덩이 둘레	치수 범위	85	90	95	100	105	110				캐주얼 바지, 운동복 하의, 작업복 하의
		M	M	L	XL	XL	XL				

섬유의 소재	물세탁 방법의 취급주의 표시 범위
면, 마, 폴리에스터,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아크릴, 아크릴계,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모, 견, 아세테이트, 고무사	
아크릴(장섬유)	

섬유의 소재	염소가공의 취급주의 표시 범위
모, 견, 나일론, 폴리우레탄, 금속사, 고무사	
기 타	

섬유의 소재	다열철 방법의 취급주의 표시 범위
면, 마, 레이온(단섬유), 폴리에스터	
모, 견, 레이온(장섬유), 비닐론,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나일론	
아크릴(단섬유), 아크릴계, 폴리우레탄 이형단량사, 필라멘트가공사, 고무사	
아크릴(장섬유), 폴리염화비닐	

섬유의 소재	드라이클리닝의 취급주의 표시 범위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의 소재	짜는 방법의 취급주의 표시 범위
모, 견, 아세테이트	
기 타	

섬유의 소재	건조방법의 취급주의 표시 범위
견, 모, 아세테이트, 아크릴사	
기타섬유	

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서 제9조와 제16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안전검사제도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전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안전검사표시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제도로 섬유, 화학, 금속, 생활용품 등 4개분야 39개 공산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섬유제품으로는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볼 구멍복을 포함하고 있어 전형적인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공산품의 안전검정제도는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을 제외한 공산품으로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안전검정기관에서 안전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임의 제도로 유해물질 함유 섬유제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일부 의류제품은 안전검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검정제도는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검정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검정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섬유, 화학, 기계, 토건, 생활용품의 5개분야 양탄자 등 31개 공산품의 지정되어 있다. 섬유분야에서는 유해물질 함유 섬유제품, 텐트, 반사안전조끼, 양탄자가 대상 품목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섬유제품은 안전검정 기준에서 규정한 품목의 의류에 유해성분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리한다.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류제품은 유아복, 속옷류, 잠옷류, 양말류, 장갑류와 일반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기저귀류, 기저귀카바류, 턱받이류, 모자류, 침구류, 가발류 등이 있다. 각 품목에 따른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그 기준치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 유해물질의 경우는 국가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와 민간단체를 위주로 한 단체 규격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경우로 나누어 실질적으로 주요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등의 27개 국가들이

의류제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은 Asbestos, Azo dyes (carcinogenic), Cadmium, Chromium, Dioxines and furanes, Disperse dyes, DTTB, Dieldrin, Flame retardants, Formaldehyde, Methyl bromide, Nickel, Organo mercury compounds, Organo tin compounds, Pentachlorophenol, Polychlorinated biphenyles and terphenyles 등이며, 대상품목은 의류를 포함한 신체 접촉 및 비접촉 섬유제품에 걸쳐 광범위하게 규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안전검증기준에 의해 유아용품 및 성인용 의류의 경우는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속옷 등의 섬유제품에 국한하여 포름알데히드, 델드린, PCP(Pentachlorophenol) 아민류에 대한 유해성 평가만을 진행하므로 실질적으로 유해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외의류의 가공처리제 또는 수지가공직물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대상 물질에

□ 기저귀류, 턱받이류

유해성분	포름알데히드	PCP	아민류
기준합량	검출되지 않을 것	5 ppm 이하	20 ppm이하

□ 기저귀카바류, 유아복

유해성분	델드린	포름알데히드	PCP	아민류
기준합량	30 ppm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5ppm이하	20 ppm이하

□ 속옷류

유해성분	델드린	포름알데히드	PCP	아민류
기준합량	30 ppm 이하	75 ppm 이하	5 ppm 이하	20 ppm이하

□ 잠옷류

유해성분	델드린	TDBPP	포름알데히드	PCP	아민류
기준합량	30 ppm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75 ppm 이하	5 ppm 이하	20 ppm이하

□ 모자류

유해성분	델드린	포름알데히드	PCP	아민류
기준합량	30 ppm 이하	유아용에 한함 : 검출되지 않을 것	5 ppm 이하	20 ppm이하

□ 잠구류

유해성분	TDBPP	델드린	포름알데히드	PCP	아민류
기준합량	검출되지 않을 것	30 ppm 이하	유아용 : 검출되지 않을 것	5 ppm 이하	20 ppm 이하

□ 양말류, 장갑류

유해성분	델드린	포름알데히드	PCP	아민류
기준합량	30 ppm 이하	유아용 : 검출되지 않을 것	5 ppm 이하	20 ppm 이하

□ 가발류(가발, 붙인수염)

유해성분	포름알데히드	PCP	아민류
기준합량	75ppm 이하	5ppm 이하	20 ppm이하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입법화된 규제 이외에도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강제규제가 아닌 자율성에 바탕을 둔 환경제품인 증제도가 확산되면서 제정과 인증에 있어서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출시장에 실질적인 무역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마크제도는 담당기관이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제조, 유통업체가 환경마크사용신청을 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나 대상품목의 선택과 환경마크 부여기준 설정시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역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예코라벨은 주방제제와 같은 유럽업체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품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현재에는 전자제품, 섬유 및 의류, 신발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종제품의 유해성 평가에서 발전하여 제품 생산 전과정 및 폐기에 이르는 환경영향분석에 의한 평가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예코라벨은 국가 주도형인 유럽연합의 Flower, 북극연합의 Swan,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Oeko-tex standard 100, Toxproof, SG, Ecoproof, ASG, eco-tex 및 회사가 주도하는 ecol-lection, Otto-Versand, its one world 등이 있고, 수출에 있어 실제 이러한 인증마크의 획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환경마크 인증제도는 섬유제품의 안전유해성에 관련한 기술적 장벽으로 실존하고 있다.

5. 결 론

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등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유해성 관련 법률 운영 및 정책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나, 세계 각국에서는 1996년 WTO의 TBT협정(무역상 기술장벽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시행과 함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술장벽에 관하여서는 1994년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관련하여 WTO/TBT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표준을 통해 기술규제가 없는 범세계적인 시장을 형성하고자 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상의 요구,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무역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WTO/TBT의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기술장벽

은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무역규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각국이 통보하는 TBT 통보문이 연간 수천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상무부와 EU 집행위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의 기술장벽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출규모가 총수출의 1/4에 달하고 수출감소 효과는 15%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기술장벽은 정부 또는 다른 법적 계약(기술명세 또는 시험인증 요구조건과 관계되는)에 의해 발생하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과 수입국의 국가표준 혹은 시험 및 인증 절차를 활용하여 소비자, 산업체, 보험회사, 혹은 다른 비정부기구들의 요구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규제장벽(non-regulatory barrier)으로 구분된다. 실제 수출의 주를 이루고 있는 섬유·의류제품류의 안전유해성과 관련하여서는 비규제장벽에 의한 적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술장벽은 국내 수출업자에게는 서로 다른 국가표준 및 기술규정에 맞추기 위한 제품의 연구개발비, 수입국의 다양한 측정 및 인증 비용, 상대국의 많은 표준과 규제를 따르는데 소요되는 경영 비용 등 일차적으로 큰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공산품의 안전·유해성에 관한 체계적인 기술규정 및 제도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단체에 의한 인증제도도 일부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의 이해도도 저조하므로 현실적으로는 국내 제조 또는 수입 공산품에 대한 유해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술표준원에서는 현행 운영하고 있는 “품질경

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안전검사, 안전검증제도 이외에도 각종 인증제도의 총괄 관리 및 국가들 간에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체결 등 국가간 표준 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및 자국 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하지만 섬유·의류제품의 경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 유해성이 상품 선택의 우선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 수입, 유통 및 소비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법률 및 제도 정비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추진하고 있는 섬유·의류제품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2005). 기술표준원.
 공산품 품질표시 실태조사. (2002).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공산품 품질표시제도 개선방안. (200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기술표준고시 제2004-566호,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품질 표시기준 부속서 1 섬유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2004).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관계법령·규정집. (2003). 기술표준원.

최 형 기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학사, 석사, 박사)
 현재 산업자원부 안전서비스표준부 생활복지표준과장
